

2015. 2. 6.(금) 16:30

8층 대회의실



2015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1부>

- 개 회 _____ 사 회 자
- 위촉장 수여 _____ 구 청 장
- 구청장님 인사말씀

<2부>

- 운영계획보고 _____ 기획예산과장
- 위원소개 _____ 각 위 원
- 위원장 선출 _____ 기획재정국장
- 회의안건 논의 _____ 위 원 장
- 폐 회



성 동 구

(기획예산과)

- 2015년도 제1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I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3, 제32조의 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5조, 제27조

II 운영개요

위원회 구성: 12명

- 위촉직 위원: 9명(변호사2, 세무사1, 회계사1, 교수4, 전직공무원1)
- 당연직 위원: 3명(기획재정국장 외 2명, 심의 안건별 임명)
 - ※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간 사: 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임기: 3년(1회 연임가능)

위원회 심의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2015년도 제1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위원장 선출

□ 심의안건: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

- | | |
|--|----------|
|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3 |
|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9 |
|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12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현 황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 관련조항: 조례안 제13조(경비 등의 지원)
- 조례제정 필요성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행사의 질적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축제위원회 기능(안 제3조): 축제의 기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축제위원회 구성(안 제4조): 문화·예술·축제 관련 전문가 등 25명 이내 구성
 - 축제사무의 위탁(안 제12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단체, 법인 등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 경비 등의 지원(안 제13조): 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지원
 - 축제의 평가(안 제16조): 축제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검토의견

-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및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구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부서장	성명/전화번호: 이현식(2286-5191)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막래(2286-52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1.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문화·예술·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자문) 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조사와 그 밖의 축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 경비를 위원회 또는 축제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수탁자에게 지원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현황

○ 추진근거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조금 관련조항: 조례안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조례제정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효문화 실천 및 확산을 통한 효의식 회복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장려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 및 경로 효친 사상의 발전에 이바지
-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안 제3조): 초·중고,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노력
- 효행 우수자 표창(안 제4조): 효행 우수자 선정 표창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5조):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각종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6조)
: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결산 등

□ 검토의견

- 세대간 소통 부족 및 단절로 전통문화인 효의식 상실에 따라 효행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및 이에 대한 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관부서: 노인청소년과	부서장	성명/전화번호: 강종식(2286-5520)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기곤(2286-5448)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 현황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1항(청소년 활동 지원)

○ 보조금 관련조항: 조례안 제10조(예산의 지원)

○ 조례제정 필요성

- 세월호 침몰사고,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사고 등의 사고를 교훈삼아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 정의(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사회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

□ 검토의견

-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자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관부서: 노인청소년과	부서장	성명/전화번호: 강종식(2286-5520)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성엽(2286-5869)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조성
2.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4.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

작·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 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표

- 심의일시: 2015. 2. 6.(금) 16:30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타당성 검토

분 야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의견
조례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지역경제 활성화, 환경훼손 여부 등)	
주민복리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충족 여부 등	
사업계획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의 적정 여부	
지속 가능성	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 여부 등	
종합의견	적 정 (), 부적정 ()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함.

2015. 2.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 원 (인)

2015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표

- 심의일시: 2015. 2. 6.(금) 16:30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타당성 검토

분 야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의견
조례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지역경제 활성화, 환경훼손 여부 등)	
주민복리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충족 여부 등	
사업계획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의 적정 여부	
지속 가능성	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 여부 등	
종합의견	적 정 (), 부적정 ()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함.

2015. 2.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 원 (인)

2015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표

- 심의일시: 2015. 2. 6.(금) 16:30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타당성 검토

분 야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의견
조례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지역경제 활성화, 환경훼손 여부 등)	
주민복지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충족 여부 등	
사업계획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의 적정 여부	
지속 가능성	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 여부 등	
종합의견	적 정 (), 부적정 ()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함.

2015. 2.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 원 (인)

2015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I. 위원회명 :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II. 일시장소 : 2015. 2. 6.(금) 16:30, 8층 대회의실
- III. 참석인원 : 재적위원 12명(참석 명 중 적정 명, 부적정 명)
- IV. 심의결과

안 건	결 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적정(), 부적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적정(), 부적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적정(), 부적정()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 위 원 장 김 종 순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